

부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9호
의결 년월일	2008. 9. 10 (제146회)

제안년월일 : 2008. 9. 3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되고,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20306호, 2007. 10. 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시기는 의회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기 중으로 정함.(안 제2조)
- 나. 의회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.(안 제3조)
- 다. 공석, 교육 및 출장 등으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리출석·답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
부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에 따라 부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출석·답변의 시기)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시기는 의회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기 중으로 한다.

제3조(범위) 의회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부시장
2. 시장의 보조기관 중에서 국장 또는 과장급
3. 법 제113조 및 114조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과장급
4.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

5. 직속기관 및 사업소 또는 하부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의 자

제4조(대리출석 및 답변) 관계 공무원이 공석 중이거나 교육, 출장, 공가,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에 따라 해당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